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68

제출년월일 : 2014.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개정사유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원금액 분담기관과 기관별 분담비율 및 조례의 유효기간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행료 지원기관 중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 사업자”를 삭제(안 제4조제2항제4호)

나. 지원대상 지역 명칭을 섬의 명칭에서 법정동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

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유효기간을 “제3연륙교 개통 시”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변경(안 부칙 제3998-1호 제2항)

라. [별표 1] 통행료 지원금액 분담목표 예상비율 조정(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는 다음 각 호의 대상 및 방법에 따라 별표 1의 분담비율로 정한다.

1. 인천광역시
2. 인천광역시 중구·옹진군

제4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운남동·운북동·운서동·을왕동·남북동·덕교동·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조례 제3998-1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부칙 제2항 중 “제3연륙교 개통 시”를 “2016년 12월 31일”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행료 지원금액 분담비율(제4조제2항 관련)

기 관		비 율	
		2013년도분	2014년도분 이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100분의 55	100분의 40
	특별회계	100분의 25	100분의 40
인천광역시 중구·옹진군		100분의 20	100분의 20

※ 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로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과 이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와 통행료 지원금액에 대하여 협의·분담하여야 한다.

※ 중구·옹진군은 100분의 20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실제 이용 비율로 분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통행료 지원) ① (생략)	제4조(통행료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 및 방법에 따라 별표 1의 지원금액 분담목표 예상 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다만, 달성되지 아니한 해당 비율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확보는 ---------- 분담비율로 정한다. <단서 삭제>
1. 인천광역시	1. 인천광역시
2. 인천광역시 중구	2. 인천광역시 중구·옹진군
3. 인천광역시 옹진군	<삭제>
4.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 사업자	<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국가에 대하여는 국비 보조 또는 지원 요청	<삭제>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대상) ① 인천광역시 중구(영종도, 용유도, 무의동,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 및 옹진군(북도면을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5조(지원 대상) ① ----------중산동·운남동·운북동·운서동·을왕동·남북동·덕교동·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

부칙(제3998-1호)	부칙(제3998-1호)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연륙교 개통 시----------	② ---------- 2016년 12월 31일----------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제4조(통행료 지원) ②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는 다음 각 호의 대상 및 방법에 따라 별표 1의 분담비율로 정한다.

1. 인천광역시

2. 인천광역시 중구·옹진군

나. 부칙 제3998-1호 ②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구 및 세대수 : 전년도 인구 및 세대수에 2009~2012년 3년간 평균 증가율 10.77% 적용 산정
- 차량 등록 대수 : 전년도 차량등록 대수에 2009년 2012년 3년간 평균 증가율 5.46% 적용 산정 (인천시 4.23%, 중구 5.46%)
- 지원금액 : 3,700원 적용, 조례 근거 100%산정 및 이용율 14.91% 적용 산정
- 통행료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 통행료 기준
- 추정 수치로 적용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추계 결과

-「붙임1」연도별 비용 추계표 산출 근거

다. 재원조달방안

-「붙임2」통행료 지원 분담 비율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3」

4. 작성자

건설교통국 도로과장 신동명

『붙임 1』

연도별 비용 추계표 산출 근거

구분	인구수	세대수	차량 등록 대수 ⓐ	연간이용 대수 ⓑ=ⓐ×365일 ×2회	통행료 ⓒ	지원금액(원) ⓓ = ⓑ×ⓒ ×14.91% (통행이용율 14.91%)	지원금액(원) ⓓ=ⓑ×ⓒ (조례 이용율 100%)	비고
2014년도분	51,566	22,251	21,900	15,987,000	3,700	8,819,548,290	59,151,900,000	
2015년도분	57,119	24,437	23,096	16,859,890	3,700	9,301,095,627	62,381,593,740	
2016년도분	63,271	26,838	24,357	17,780,440	3,700	9,808,935,448	65,787,628,758	
합계						27,929,579,365	187,321,122,498	

※ 산출기초

- 인구 및 세대수 : 전년도 인구 및 세대수에 2009년~2012년 3년간 평균 증가율 10.77% 적용 산정
- 차량등록대수
  · 전년도 차량등록대수에 2009년~2012년 3년간 평균 증가율 5.46% 적용 산정
  〔차량등록대수 증가율 : 인천시 4.23%, **중구 5.46%**〕
- 이용대수 : 등록차량 1대당 1일 2회 이용 기준으로 산정
- 지원금액 : 3,700원 적용, 조례근거 100% 적용 산정 및 이용율 14.91% 적용 산정
- 통행료 : 현재 북인천영업소 통행료 기준
- 추정 수치로 적용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2』

통행료 지원 분담 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금액		인천시 (일반회계) (100분의 40)		중구청·옹진군 (100분의 20)		인천시 (특별회계) (100분의 40)		비고
	통행 이용율 14.91%	조례 이용율 100%	14.91 %	100%	14.91 %	100%	14.91 %	100%	
2014년 도분	8,820	59,152	3,528	23,661	1,764	11,830	3,528	23,661	
2015년 도분	9,301	62,382	3,720	24,953	1,860	12,476	3,720	24,953	
2016년 도분	9,809	65,788	3,924	26,315	1,962	13,158	3,924	26,315	
합계	27,930	187,322	11,172	74,929	5,586	37,464	11,172	74,929	

『붙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도분)	2차년도 (2015년도분)	3차년도 (2016년도분)	계	비고
세입	△△△△ △△△△					
	소계					
세출	시비	7,056	7,440	7,848	22,344	평균이용율 (14.91%)
		47,322	49,906	52,630	149,858	연간차량등록대수 (100%)
	군·구비	1,764	1,860	1,962	5,586	평균이용율 (14.91%)
		11,830	12,476	13,158	37,464	연간차량등록대수 (100%)
	소계	8,820	9,301	9,809	27,930	평균이용율 (14.91%)
		59,152	62,382	65,788	187,322	연간차량등록대수 (1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7,056	7,440	7,848	22,344	평균이용율 (14.91%)
		47,322	49,906	52,630	149,858	연간차량등록대수 (100%)
	일반회계	3,528	3,720	3,924	11,172	평균이용율 (14.91%)
		23,661	24,953	26,315	74,929	연간차량등록대수 (100%)
	특별회계	3,528	3,720	3,924	11,172	평균이용율 (14.91%)
		23,661	24,953	26,315	74,929	연간차량등록대수 (100%)
	기 금					
군·구비		1,764	1,860	1,962	5,586	평균이용율 (14.91%)
		11,830	12,476	13,158	37,464	연간차량등록대수 (100%)
민 간						
기 타						